# 군급식법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0 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황 희·김종민·차지호

김병주 • 이건태 • 정성호

추미애 • 유호중 • 주철현

허 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,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.

그러나 군급식은 「학교급식법」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대통령령인 「군인 급식 규정」 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. 특히 최 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 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·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 강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군급식에 관한 계획, 군급식 위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둠(안 제5조).
- 다. 각 군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,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도록 하며, 군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,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·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마. 군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·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바.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.
- 사.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 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군급식 운영 실

대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13조).

# 군급식법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군급식"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 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  - 2. "군급식위탁공급업자"라 함은 제11조에 따라 각 군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  - 3. "군급식운영관계관"이라 함은 식단작성, 식품수납·검사, 조리·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임무)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군급식 대상)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제5조(군급식위원회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둔다.
  - 1. 제3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계획
  - 2. 제11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 위탁
  - 3. 식재료 및 군 급식 단가 등 결정
  - 4. 그 밖에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군급식위원회는 식재료 및 군 급식 단가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 • 운영

- 제6조(군급식시설·설비) ① 각 군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·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7조(영양사의 배치 등) ① 제6조에 따라 군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부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와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두되, 영양사 및 조리사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군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군무원을 둘 수 있다.
- 제8조(식재료) 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영양관리)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위생·안전관리) ① 군급식은 식단작성, 식재료 구매·검수· 보관·세척·조리, 운반, 배식,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 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 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  - ② 군급식의 위생・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군급식의 운영방식) ① 각 군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 ·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,

- 이 경우 전 · 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,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) ① 각 군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고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(이하 "군급식운영관계관"이라 한다)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
  - 2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
  - 3. 「축산법」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 재료
  - 4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,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
  - ② 군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- 1. 제8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,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생·안전관리기준
- 2.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 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군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 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,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 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보칙

- 제13조(군급식 운영평가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·실태조사의 방법·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출입・검사・수거 등)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시설에 출입하여 식품·시설·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·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2조제2항제1호·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제15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16조(행정처분 등의 요청) ① 국방부장관은 「식품위생법」・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・「축산법」・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허가 및 신고・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 등의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한다.

#### 제4장 벌칙

- 제17조(벌칙) ①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1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
  - 2.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·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제18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9조(과태료) ① 제1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 - ② 제12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4조제3항

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.